

업 무 보 고 사 항

□ 제 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

-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- '95. 10. 14
 - . 집회일시 : '95. 10. 23 (월) 오후 14시
 - . 집회이유 군정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청취와 유관기관 업무청취
그리고 조례안 처리 및 기타 안건 상정 처리
 - . 집회 요구자 : 홍이식 의원 외 4명

- 제 38회 화순군의회 집회공고 - '95. 10. 17 (화순군의회 공고 1995- 7호)
< 공고내용 >
 - . 일 시 : '95. 10. 23 (월) 오후 14시
 - . 장 소 : 화순군의회 의사당

□ 각종 안건 발의 및 제출상황

- 제 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발의
 - . 발의자 : 문팔갑 의원 외 2명
 - . 회 기 : '95. 10. 23 - 10. 31 (9일간)

-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발의
 - . 발의자 : 정찬섭 의원 외 3인
 - . 출석요구내용 : 별 첨

-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 안 발의
 - . 발의자 : 김성인 의원 외 5인
 - . 발의내용 : 건의안에 의함

- 5. 18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발의
 - . 발의자 : 조영길 의원 외 7인
 - . 발의내용 : 결의안에 의함

□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제출 - '95. 10. 19

○ 제안이유

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차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함.

○ 주요골자

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 제2조3항(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)을 읍·면장 또는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.

□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출 - '95. 10. 19

○ 제안이유

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위임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95조 (사무의 위임 등) 로 제정되어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 (정비) 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

.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군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조례로 읍면장에게 위임하며,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 규정은 폐지함.

. 조례위임 총건수 : 69건 (군수 고유사무)

당 초 : 62건

신규위임 : 11건

군 환 원 : 4건

□ 기 타 사 항

○ 타도 축산폐수처리장 시설견학

. 기 간 : '95. 9. 28 - 9. 30 (3일간)

. 대상지 : 정주시, 김제시, 부여, 공주, 이천처리장, 고양군 축산농가

. 목 적 : 자료수집 및 비교분석

○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설치계획에 따른 주민공청회

. 일 시 : '95. 10. 13 (금) 14:00 - 18:00

. 장 소 : 도곡면 회의실

. 참 석 : 특위위원, 주민대표등 주민 70여명

□ 제 38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

○ 회기결정의 건

○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○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